



“산업폐자원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”

한국 산업 폐 자원 공 제 조 합

Korea Industrial Waste-Resources Mutual-aid Association

수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

(경 유) 청소행정과장

제 목 폐기물처리업체 업종별 부지경계 구분 시설물 설치 조



1. 귀 시·군·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조합에서는 00시에 중복허가를 득한[사업장폐기물중간처리업(기계적처리전문, 기타재활용전문), 생활폐기물선별장 등] 폐기물처리업체가 같은 부지 내 업종별 부지경계 없이 배출성상이 다른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, 동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환경부에 문의 한 결과, 붙임과 같이 같은 부지 내 여러 업종이 있어 배출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 보관될 우려가 있다면 보관되는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업종별 부지경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.

3. 따라서, 귀 시·군·구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 중 두가지 이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부지경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을 경우 보관시설을 구분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환경부 질의회신 사본 1부. 끝.

한국 산업 폐 자원 공 제 조 합 이 사 장



담당 최성훈 팀장 조욱래 사무국장 장기석 부이사장 이강곤 이사장 안경복

협 조 자

시 행 한공조 - 407호 (2011. 7. 27) 접수

우 157-754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84-2 우리벤처타운 11층

전 화 02-718-7900

전 송 02-718-7171

kiwrma@kiwrma.or.kr

www.kiwrma.or.kr

/ 비공개

서민을 따뜻하게, 중산층을 두텁게



환 경 부



수신자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(우157-030 서울 강서구 등
 (경유) 촌동 684-2 우리벤처타운 11층)
 제목 폐기물처리업 중복허가 시 업종별 부지경계 구분에 대한 질의 회
 신

1. 환공조-331(2011.06.21.)호와 관련입니다.
2. 폐기물처리업 중복허가 시 업종별 부지경계 구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
【질의요지】

○ 중복허가(생활폐기물선별업, 기계적처리중간처리업, 기타재활용전문
 중간처리업)를 득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업종별 부지경계의 명확한 구분없이 처리시설
 및 보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상 가능한 것인지?

○ 만약, 광주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동일 사업장 내 중복허가를
 득하고 업종별 부지경계 없이(벽면, 철조망, 헨스 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함)배출성상이
 다르고 처리방법 및 처리비용이 다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, 건설폐기물 등을 혼합
 하여 보관·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?

【회신내용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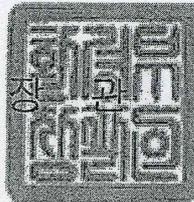
○ 폐기물처리시설 중복허가 시 업종별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은 허가상
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.

- 특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
 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합니다.(폐기물관리법 시행령
 제7조제1항제6호)



- 다만, 같은 부지 내 여러 업종이 있어 배출성상이 다른 폐기물이
 혼합보관될 우려가 있다면 보관되는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업종별 부지경계를 나타낼
 수 있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. 끝.

환 경 부



주무관 이상천 환경사무관 정상순 전결 07/01

협조자

시행 폐자원관리과-1979 (2011. 07. 01.) 접수
우 427-729 경기 과천시 중앙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/ <http://www.me.go.kr>
전화 02-2110-6938 전송 02-504-9292 / sky0219@me.go.kr / 비공개(7)

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, 대한민국이 뛰고 있습니다!